Ch. 9 자동차와 안전운전

● Contents

9.1 도로교통 법규 이해와 운전 자세

● 교통사고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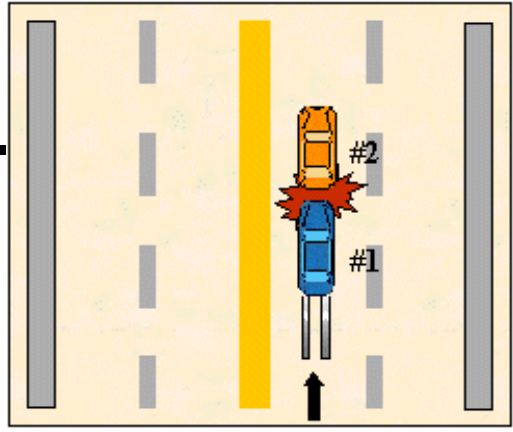

❖ 교통사고 유형

1)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

- 적용법조 : 도로교통법 17조 1항 (안전거리 확보)
- 법규내용 :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사고실례 : #1차량은 진행 중 동일 방향의 앞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따라 정지하고자 급제동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#2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
- 사고처리 : 사고차량이 종합보험(공제조합)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(합의)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
- 결 과: # 1차량 가해차량, # 2차량 피해차량
- 면허처분 : 위반행위(안전거리 미확보)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
- 예 외 : #2차량의 후진이나 고의적인 정지사고 시에는 #2차량을 가해차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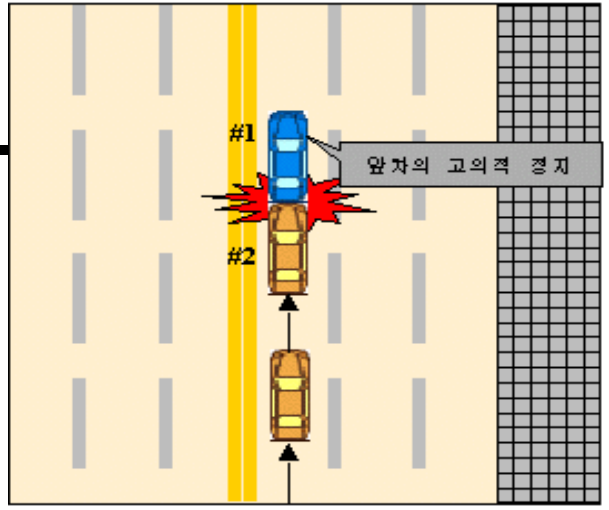

2) 앞차의 고의적 급정지로 인한 사고

- 적용법조 : 도로교통법 17조의 3 (급제동 금지)
- 법규내용 :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않된다.
- 사고실례 : #1 차량은 진행 중 고의적으로 급정지하여 동일방향 뒤에서 오고 있던 #2 차량이 후미를 추돌한 사고
- 결 과 # 1차량 가해차량, # 2차량 피해차량
- 사고처리 : 사고차량이 종합보험(공제조합)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(합의)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
- 면허처분 : 위반행위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
- 예 외 : 신호착각, 진로변경 등으로 급정지한 경우는 추돌차량 과실

3) 개문운행 사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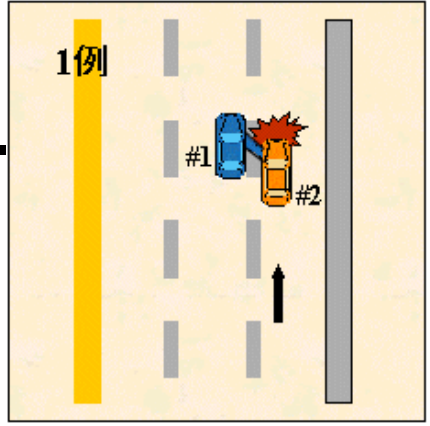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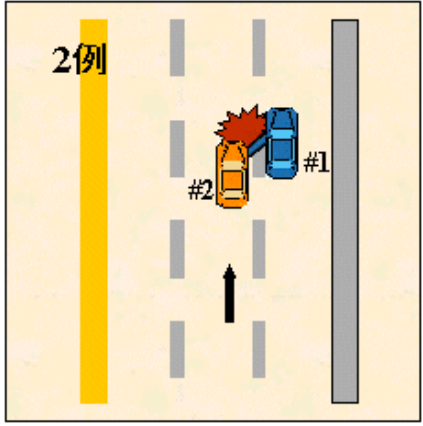

- 적용법조 : 도로교통법 48조 1항 7호
  (운전자의 준수사항)

- 법규내용 :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되며,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사고실례 : #1 차량이 차의 문을 함부로 열어서(안에서 밖으로) 마침 측면을 진행하던 #2 차량이 #1 차량 문짝을 충돌한 사고

- 결 과 # 1 차량 가해차량, # 2 차량 피해차량

- 사고처리 : 사고차량이 종합보험(공제조합)에 가입되어 있거나,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(합의)공소권 없음으로 사고처리

- 예 외 : #1차량의 문을 열고 타던 중(밖에서 안으로) 사고의 경우

4) 대로 진행 차에 대한 우선권 양보 불이행 사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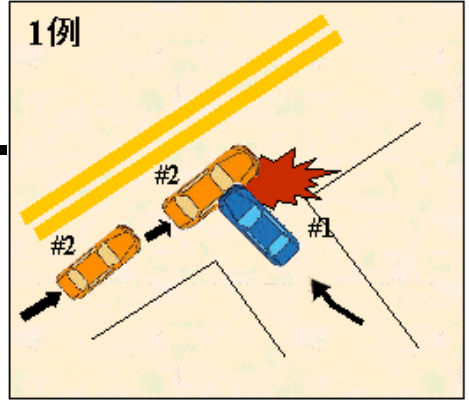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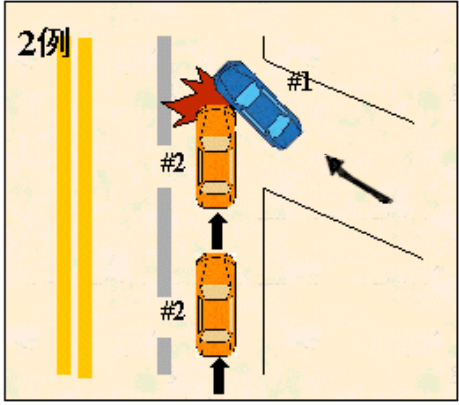

- 적용법조 : 도로교통법 23조(직진 및 우회전차 등의 우선)
- 법규내용 : 모든 차는 골목길에서 나와 대로로 진입 시(지선도로에서 나와 간선도로 진입 시, 대로상에서 회전 시, 정차했다가 출발 시 등)에는 통행 우선권이 있는 #2 차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사고실례 : #1차량은 소로(지선도로)에서 나와 대로로 진입하다가 마침 대로를 직진하고 있는 #2차량과 충돌한 사고.
- 결 과 # 1차량 가해차량, # 2차량 피해차량
- 사고처리 : 사고차량이 종합보험(공제조합)에 가입되어 있거나,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(합의)공소권 없음으로 사고처리
- 면허처분 : 위반행위와 피해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
- 예 외 : #2차량의 신호위반, 정비불량, 고의사고의 경우

5) 회전 차의 직진 차에 대한 우선권 양보 불이행 사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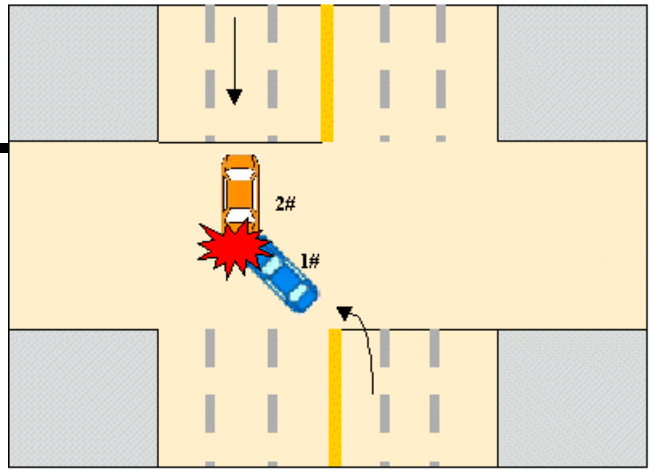

- 적용법조 : 도로교통법 23조(직진 및 우회전차 등의 우선)
- 법규내용 :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할 경우 그 교차로를 직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.
- 사고실례 : #1차량은 좌측 소로(지선도로)로 좌회전 중 마침 대로를 직진하고 있는 #2차량과 충돌한 사고
- 결 과 # 1차량 가해차량, # 2차량 피해차량
- 사고처리 : 사고차량이 종합보험(공제조합)에 가입되어 있거나,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(합의)공소권 없음으로 사고처리
- 면허처분 : 위반행위와 피해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
- 예 외 : #2차량의 신호위반, 정비불량, 고의사고의 경우

6) 이중 앞지르기 시 사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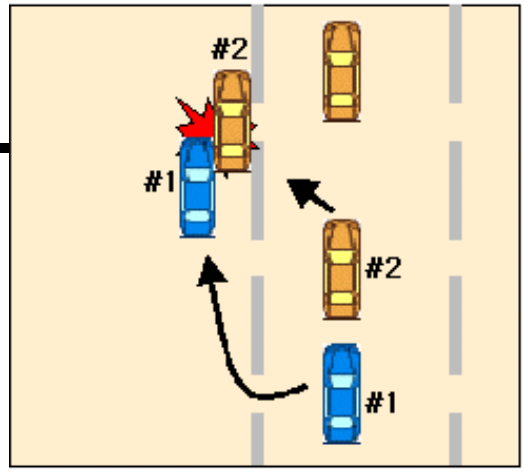

➢적용법조 : 도로교통법 20조(앞지르기 금지위반)

➢법규내용 :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때에는 그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. 뒤차는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.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.

➢사고실례 : #1 차량이 주행 중 앞에 가고 있던 #2 차량이 앞지르기 하고 있는 것을 이중 앞지르기하다 #2 차량을 충돌한 사고

➢결 과 # 1차량 가해차량, # 2차량 피해차량

➢사고처리 : 사고차량이 종합보험(공제조합)에 가입되어 있어도 치상사고이면 형사입건처리

➢면허처분 : 위반행위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

➢예 외 : 앞차의 장기주차 때문에 만부득 앞지르기 하던 중 사고

7) 신호위반 사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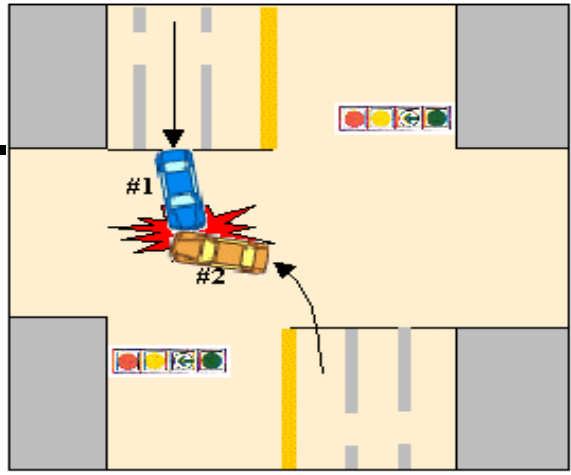

➢적용법조 : 도로교통법 5조 (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)

➢법규내용 :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(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(이하 "경찰공무원등"이라 한다)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.

➢사고실례 : #1 차량이 진행방향의 신호기가 좌회전 신호인데 이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진행하고 있는 #2 차량과 충돌한 사고

➢ 결 과 # 1차량 가해차량, # 2차량 피해차량

➢사고처리 : 사고차량이 종합보험(공제조합)에 가입되어 있어도 치상사고이면 형사입건처리

➢면허처분 : 위반행위와 피해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처분

➢예 외 : 신호기 고장 중 사고

8) 차로 변경중 사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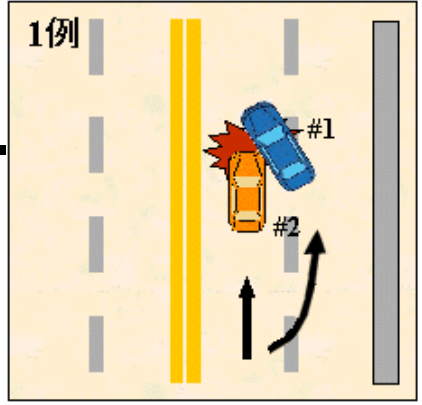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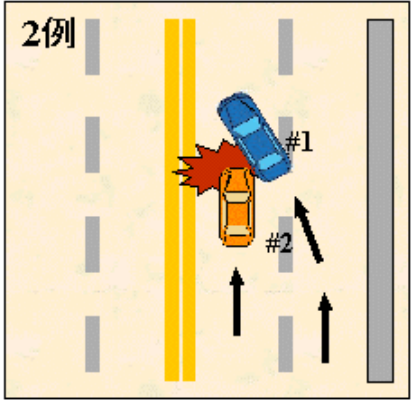

- 적용법조 : 도로교통법 제17조의 2(진로변경금지)

- 법규내용 :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사고실례 : #1차량은 진행중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로 변경하다가 마침 좌측 후방에서 직진하고 있는 #2차량과 충돌한 사고

- 결 과 # 1차량 가해차량, # 2차량 피해차량

- 사고처리 : 사고차량이 종합보험(공제조합)에 가입되어 있거나,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(합의)공소권 없음으로 처리

- 면허처분 : 위반행위와 피해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

- 예 외 : #2차량의 정차 출발이나 후진사고 경우

9)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사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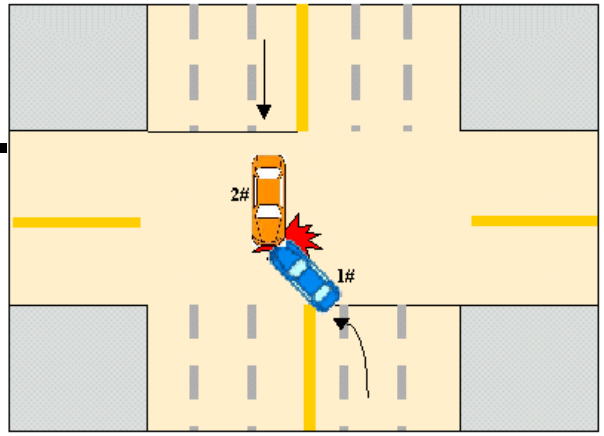

➢적용법조 : 도로교통법 제22조 (교차로 통행방법 위반)

➢법규내용 :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안쪽을 각각 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좌회전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에서만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하여야 한다.

➢사고실례 : #1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일부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#2 차량을 충돌한 사고

➢면허처분 : 위반행위(교차로 통행방법위반)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처분

➢예 외 : #1차량이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충돌된 경우

10)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사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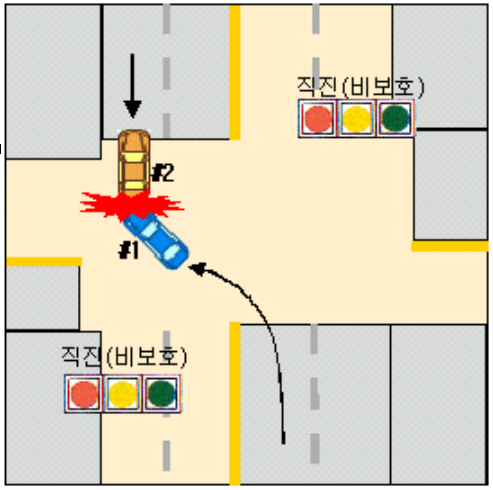

➢적용법조 : 도로교통법 5조(신호위반)

➢법규내용 :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(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(이하 "경찰공무원등"이라 한다)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. [모든 차는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.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.

➢사고실례 : #1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 지점에서 직진신호 시에 좌회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고 있던 #2 차량과 충돌한 사고

➢결 과 # 1차량 가해차량, # 2차량 피해차량

➢사고처리 : 사고차량이 종합보험(공제조합)에 가입되어 있어도 치상사고이면 형사입건처리

➢면허처분 : 위반행위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

11) 일방통행상의 교통 사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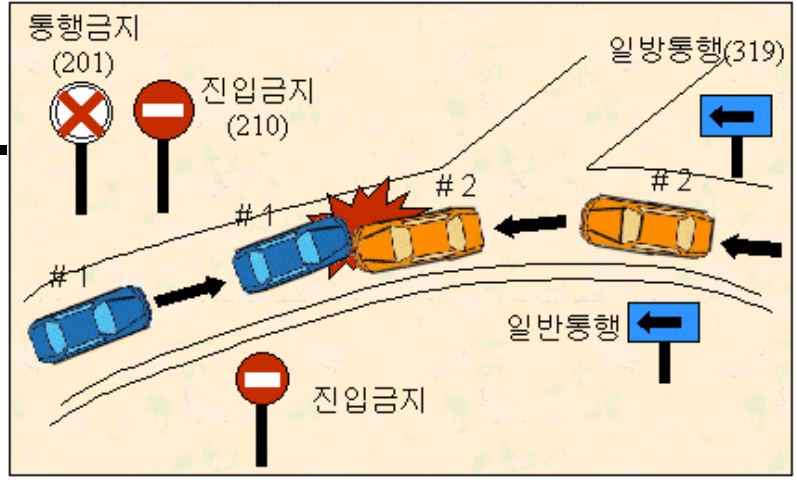

➢적용법조 : 도로교통법 제5조 (신호위반)

➢법규내용 :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(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(이하 "경찰공무원등"이라 한다)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.

➢사고실례 : #1 차량이 일방통행로에서 잘못 진입하여 반대방향으로 통행하다가 마주오는#2 차량과 충돌한 사고

➢결 과 # 1차량 가해차량, # 2차량 피해차량

➢사고처리 : 사고차량이 종합보험(공제조합)에 가입되어 있어도 치상사고이면 형사입건처리

➢면허처분 : 위반행위와 피해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처분

➢예 외 : 일방통행표지가 없는 이면도로를 역으로 진행 중 사고

12) 핸들과대조작 사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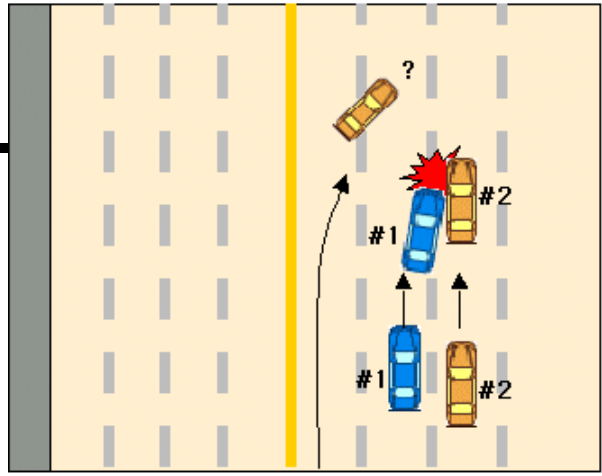

➢적용법조 : 도로교통법 44조 (안전운전의 의무)

➢법규내용 :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·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➢사고실례 : #1차량이 진행중 좌측 차로에서 불상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자 이를 피하고자 우측으로 과대핸들 조작하여 우측에서 진행중인 #2 차량을 충돌한 사고

➢결 과 # 1차량 가해차량, # 2차량 피해차량

➢사고처리 : 사고차량이 종합보험(공제조합)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(합의)공소권 없음으로 처리

➢면허처분 : 위반행위(안전운전의무 위반)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

➢예 외 : 불상차량이 원인제공(긴급피난)에 의한 사고

13) 후진으로 인한 사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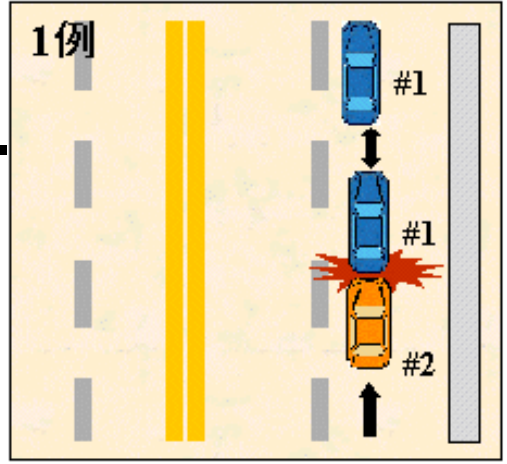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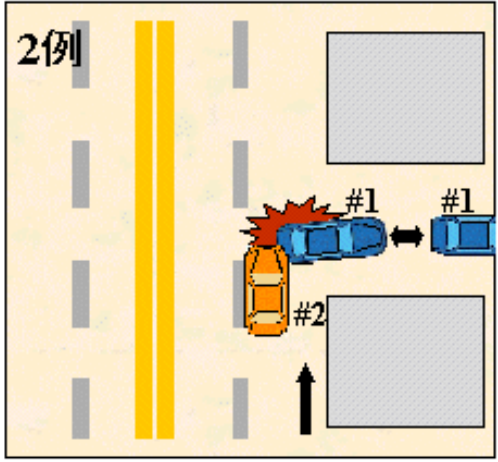

➢적용법조 : 도로교통법 16조(후진위반)

➢법규내용 : 모든 차는 보행자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.

➢사고실례 : #1 차량은 후방 교통보조자를 제우지 않고 막연히 후진하다가 정상 통행중인 #2 차량과 충돌한 사고

➢결 과 # 1차량 가해차량, # 2차량 피해차량

➢사고처리 : 사고차량이 종합보험(공제조합)에 가입되어 있거나,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(합의)공소권 없음으로 사고처리

➢면허처분 : 위반행위(후진위반)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

➢예 외 : #2 차량의 고의 충돌사고의 경우

14)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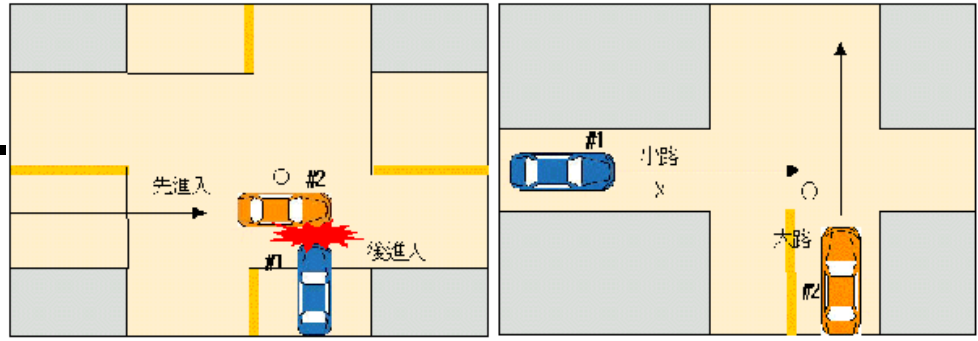

➢적용법조 : 도로교통법 14조,22조,23조,27조,44조(통행우선순위, 교차로 통행방법, 직진 및 우회전차 등의 우선, 서행 및 일시정지, 안전운전의무 위반)

➢법규내용 : 모든 차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
가)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, 나) 전. 후. 좌. 우 주시 교통상황을 예의 파악한 후
다)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진입,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.
① 선 진입 차량, ② 동시진입 시 통행우선 순위 차, ③ 동시진입 시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
④ 동시진입 시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, ⑤ 동시진입 시 직진차가 좌회전 차보다 우선
⑥ 동시진입 시 우회전차가 좌회전 차보다 우선

➢사고실례 : #1 차량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행하며 막연히 진행하다가 통행 우선 순위가 우위인 #2 차량과 충돌한 사고

➢사고처리 : 사고차량이 종합보험(공제조합)에 가입되어 있거나,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(합의)공소권 없음으로 사고처리

➢면허처분 : 위반행위(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)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

➢예 외 : 신호등 있는 교차로, 주차 차량의 출발 중 사고 경우 등

15) 부당한 회전 사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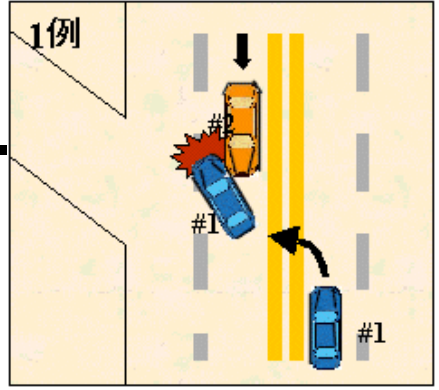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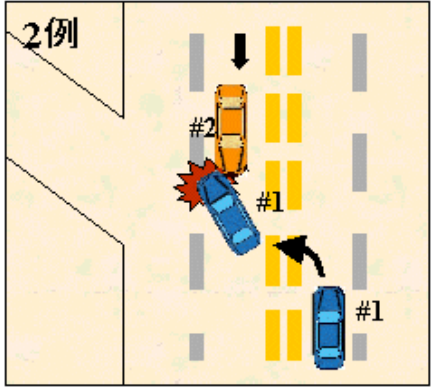

➢적용법조 :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 (중앙선침범)

➢법규내용 : 차마는 도로(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)의 중앙(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.)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.

➢사고실례 : #1 차량이 좌측 도로로 가기 위해 실선 또는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다가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고 있던 #2 차량과 충돌한 사고

➢결 과 # 1차량 가해차량, # 2차량 피해차량

➢사고처리 : 사고차량이 종합보험(공제조합)에 가입되어 있어도 치상사고이면 형사입건처리

➢면허처분 : 위반행위(중앙선 침범)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

➢예 외 : #1 차량의 불가항력적 중앙선 침범사고

16)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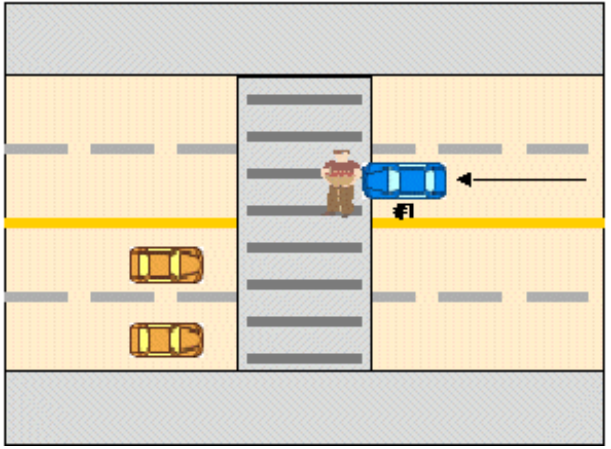

- 적용법조 : 도로교통법 24조 제1항 (보행자 보호의무 위반)
- 법규내용 : 모든 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, 위험을 주어서는 안된다.
- 사고실례 : #1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횡단보도에 이르러 일시정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중인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
- 결 과 # 1차량 가해차량, # 2차량 피해차량
- 사고처리 : 사고차량이 종합보험(공제조합)에 가입되어 있어도 치상사고이면 형사입건처리
- 면허처분 : 위반행위(보행자 보호의무 위반)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처분
- 예 외 :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발생된 사고

17)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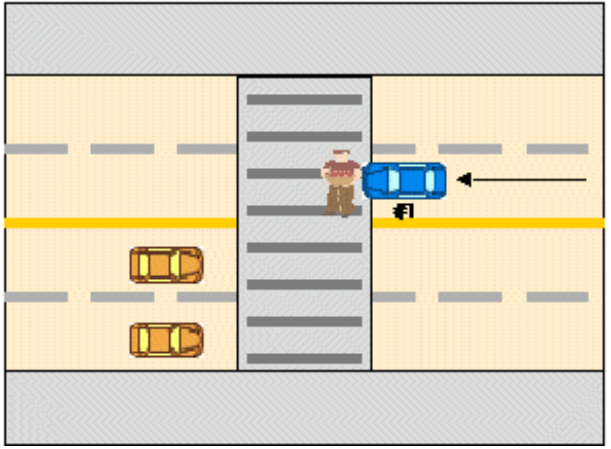

- 적용법조 : 도로교통법 24조 제1항 (보행자 보호의무 위반)
- 법규내용 : 모든 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, 위험을 주어서는 안된다.
- 사고실례 : #1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횡단보도에 이르러 일시정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중인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
- 결 과 # 1차량 가해차량, # 2차량 피해차량
- 사고처리 : 사고차량이 종합보험(공제조합)에 가입되어 있어도 치상사고이면 형사입건처리
- 면허처분 : 위반행위(보행자 보호의무 위반)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처분
- 예 외 :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발생된 사고